

서울특별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3676
----------	------------

제안년월일 : 2026. 6. 17.

발 의 자 : 문화체육관광위원장

1. 수정이유

- 개정안은 생성형 인공지능의 급속한 발전으로 예술인의 권익이 침해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윤리적이고 공정한 생성형 인공지능의 이용 기반을 마련하여야 할 시장의 책무 등을 규정하고자 발의되었음.
- 다만 조문에 대한 해석상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부 자구 표현을 정비하고자 함.

2. 수정주요내용

- 가. 시장이 각종 예술지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5조의2).

서울특별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의2(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예술지원사업의 기준) 시장은 예술인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예술지원사업 추진 시 사업별 특성을 고려한 생성형 인공
지능 활용 허용 범위 및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수정안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제3조(시장의 책무) ① ~ ④ (생략) <u><신설></u>	제3조(시장의 책무) ① ~ ④ (현행과 같음) <u>⑤ 시장은 예술인의 예술 활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생성형 인공지능 (이하 “생성형 인공 지능”이라 한다)의 윤리적이고 공정한 이용 기반을 마련하 도록 노력하여야 한다.</u>	제3조(시장의 책무) ① ~ ⑤ (개정안과 같음)
제5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 3. (생략) <u><신설></u> <u>4. (생략)</u>	제5조(지원사업) ① - ----- ----- ----- ----- ----. 1. ~ 3. (현행과 같음) <u>4. 생성형 인공지능과 관련된 예술 활동 저작권 보호 지원</u> 5. (현행 제4호와 같음)	제5조(지원사업) ① · ② (개정안과 같음)

② (생 략) <u><신 설></u>	② (현행과 같음) <u>제5조의2(생성형 인공 지능 활용 예술지원 사업의 표시) 시장은 예술 지원 사업에 생성형 인공지능이 활용되는 경우 이를 표시하는 기준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u>	<u>제5조의2(생성형 인공 지능 활용 예술지원 사업의 기준) 시장은 예술인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예술 지원사업 추진 시 사업별 특성을 고려한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허용 범위 및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u>
--	--	--

서울특별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시장은 예술인의 예술 활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생성형 인공지능(이하 “생성형 인공지능”이라 한다)의 윤리적이고 공정한 이용 기반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제1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생성형 인공지능과 관련된 예술 활동 저작권 보호 지원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예술지원사업의 기준) 시장은 예술인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예술지원사업 추진 시 사업별 특성을 고려한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허용 범위 및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시장의 책무) ① ~ ④ (생략)	제3조(시장의 책무) ① ~ ④ (현행과 같음)
<u><신설></u>	<u>⑤ 시장은 예술인의 예술 활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생성형 인공지능(이하 “생성형 인공지능”이라 한다)의 윤리적이고 공정한 이용 기반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u>
제5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5조(지원사업) ①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u><신설></u>	<u>4. 생성형 인공지능과 관련된 예술 활동 저작권 보호 지원</u>
4. (생략)	5. (현행 제4호와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u><신설></u>	<u>제5조의2(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예술 지원사업의 기준) 시장은 예술인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예술지원사업 추진 시 사업별 특성을 고려한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허용 범위 및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u>